##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30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전종덕·이수진·신장식

백선희 • 이해민 • 송옥주

추미애 • 한창민 • 윤종오

정혜경 · 송재봉 · 임미애

민형배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공공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나 공무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근로자의 날(5월 1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제2조(공휴일)
호와 같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5. 근로자의 날(5월 1일)
<u>5.</u> ~ <u>10.</u> (생 략)	<u>6.</u> ~ <u>11.</u> (현행 제5호부터 제1
	()호까지와 같음)